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충돌하는가-

I. 머리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이다. 그것은 대중에 대한 사상 선전의 수단을 의미하는 데에서, 사회적 집단형성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언론의 본질은 사고(思考)하는 인간의 가치의 표현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문제나 정치문제를 그 대상으로 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과정을 규정하는 ‘여론의 형성’으로 발전하게 된다(한태연 1963).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라 해도,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헌법 제21조4항). 그 결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하여 대표되는 개인의 인격권과,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대표되는 언론의 자유는 서로 상대를 제한하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한태연 1963). 언론매체는 개인의 명예 등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여 그 인격을 손상케 하고, 또한 개인은 그 명예를 주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여기에 동일한 인간의 기본권에 있어서의 이른바 ‘순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양자가 충돌하였을 때 그 어느 쪽에 우월권을 두느냐 하는, 이른바 ‘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의 조화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양자에 대해서는 시대상황에 따라 경중이 따로 있어 왔다. 각각의 고유한 사회적 환경에 근거하여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회적 공익실천에 중요한가 하는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해 왔다(이재진 2002).

그러나 언론의 자유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명예에 있어서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을 의미하는 까닭에, 이 양자간에는 순위의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서로가 맞물려 있어 일방이 없으면 타방도 성립되지 않는다. 구태여 그 순위에 우열이 있다면, 본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이익형량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문제에 속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조정함에 있어 ①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의 여부 ②표현내용이 공적 사안인지의 여부 또는 ‘알 권리’의 객체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 ③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강경근 2000, 강준만 2001).

어쨌든 언론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또 다른 개인의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헌재 89헌마165). 기본권은 그 본질상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 지방 문제와 관련된 ‘언론소송 사례’ 3건을 살펴보고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구태여

판결례를 앞세우는 것은,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1) 대법원 제3부는 2001년 4월 27일 A일보(도내 일간지)가 1997년 4월 1일자에 ‘4·3 계엄령은 불법이었다’, ‘불법 계엄령 밑에서 억울한 죽음’ 등을 보도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모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 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원심이…피고가 이 사건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보도하는 과정에서…그것이 단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나름대로 진실확인 작업을 거쳐 보도한 것인 이상, 피고가 전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단 유타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또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선포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승만 개인 및 그 후손의 명예보다는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주 4·3사건의 발생원인과 이 사건 계엄선포 및 사태의 진압 경위, 그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역사적 평가 작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그 진상의 일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도에 임한 것이므로 그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원심의 판단과 “…군경 토벌대에 의하여 다수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에 다소 과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그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 뿐, 이승만 전 대통령 개인이나 그 양자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대법원판결 2001도7216).

(사례2) 서울지법 민사합의 제25부는 2000년 9월 20일 제주4·3항쟁과 관련된 B신문(중앙 일간지)의 논평기사 내용 중 “서북청년단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북청년단을 대리한 문모 씨가 신문사와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의 주된 취지는 제주4·3항쟁 발생 뒤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공익적 내용이며, 논설위원이 기사를 쓰며 참고했던 자료에 원고의 발언이 담겨 있는 등 서북청년단에 의한 제주도민의 희생이 컸다는 것을 믿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필자가 이 사건 논평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서북청년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논평기사인 점, 그 전제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점, 필자가 근거로 삼은 자료 등에 상당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서울지법 99가합 102724).

(사례3) 대법원 제2부는 2001년 1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모 씨가 C신문사(중앙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C신문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그 소속 담당기자가 기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궁이 가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계엄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C신문사가 1997년 4월 1일자에 ‘4·3계엄령은 불법’,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하로 1948년 제주4·3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도 신문사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판결 2000다10208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8집<언론중재위원회>p48 사실개요 전제)(본문중 고딕체는 필자가 강조하기 위한 것임. 이하 같음).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충돌하는가. 그 조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기자들의 ‘숨 쉴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가. 기자들의 ‘자기검열’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진정 명예훼손 법규는 ‘은밀한 검열’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해결은 각 사회가 개인의 명예의 중요성과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회적 공익 실천에 중요한가 하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이재진 2002).

II.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 언론이 이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 우리의 법제에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같음하거나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